

# 4. 住宅建設基準等に 관한 規程 改正令 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6-41號 1996. 2. 17

## 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건설여건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공동주택, 유치원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제한하던 것을, 주거지역과 취락지구의 공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공해공장은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공동주택은 1동의 길이를 120미터 이

내로 건설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전문인 설계자 및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이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.

- 다. 주택내부마감재료의 최소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정하였던 것을 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내부마감재료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주체나 입주민의 자율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함.
- 라. 주택단지내 주차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1세대 1대 수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단지내 여유공지의 잠식을 막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확대함.
- 마.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난방등 온수사용량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적산열량계를 의

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던 것을 온수사용량만을 측정하는 유량계와 열량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3월 9일까지 다음사

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 500-4122, 참조 주택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

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